

### 3 휴가

#### 가. 근거

- 1)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(대통령령 제34660호, 시행 2024. 7. 2.)
- 2) 국가공무원복무 규칙(총리령 제2009호, 2025. 1. 16.)
- 3)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83호, 시행 2023. 11. 12.)
- 4)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(인사혁신처예규 제193호(2025. 2. 11.))

##### ◦ 휴가제도의 운영

-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(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)  
「교육공무원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(2013. 3. 23.)

##### ◦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(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2조, 2023. 1. 20.)

- ① 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·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「교육공무원법」제22조의2에 따라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(이하 "순회교사"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사에 대하여는 제8조(특별휴가)에 한하여 이 예규를 적용한다.

##### ◦ 공무외의 국외여행

-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, 질병의 치료, 친지방문, 견문목적, 취미 활동, 가족기념일 여행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
- 교원(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)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하기·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. 다만,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.

※ 교육공무원법 제41조 (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)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.(2011. 9. 30.)

#### 나. 적용대상

- 1) 고등학교 이하 공립 각급학교 교원
- 2)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(이하 "순회교사")는 제8조(특별휴가)에 한하여 적용

#### 다. 휴가제도의 운영

##### 1) 휴가의 실시원칙

- 가) 교원의 휴가는 연가·병가·공가·특별휴가로 구분함
- 나)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,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며,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